보성군 고시 제2016 - 20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낚시어선 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『낚시관리 및 육성법』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, 승객 안전사고예방,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16. 5. 17. 보 성 군

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1.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부터 승객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,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, 환경·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사항과 낚시 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<u>승객명부 작성을 위한</u> 낚시어선 업자 또는 선원이 **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**
- 3.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 승선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낚시인은 선상낚시 또는 무인도서 및 갯바 위로 안내 받아 낚시중에도 **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**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나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- 다.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시거나 위험물 반입 및 운송 ,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라.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
- 바.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낚시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사.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(油類) · 분뇨 · 미끼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
- 아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- 자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- 6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 등 낚시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.

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1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<u>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</u>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<u>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</u> <u>아니하는 경우에는 숭선을 거부</u>하여야 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4.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업의 규모 및 영업제한시간
 - 가. 「수산업법」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중 선외기 설치어선은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낚시어선검사(최대 승선 인원 부여 등)를 받은 **총톤수 0.5톤이상 3톤미만 어선**

- 나. 영업시간 제한(입출항기준)
 - 하절기(4. 1. ~ 10. 31.) : 22:00 ~ 익일 02:00
 - 동절기(11. 1. ~ 3. 31.) : 21:00 ~ 익일 03:00
 -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 : 연중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
 - 단)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증서 상에 항해시간을 적용한다.

5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사항

가. 선원의 증원 및 교체

- 입출항 신고시간을 기준으로 전날의 운항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선장(선원)을 교체하여야 한다.

나. 운항횟수 : 제한없음

-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항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함.

다.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

- 보성군 관내 : 인공어초시설지구 세부위치 : 따로붙임
 - 득량 비봉해역 : 28ha
 - 회천 객산해역 : 16ha
 - 회천 전일해역 : 20ha
- ※ 전남도 및 도내 타시군에서 따로 고시 또는 공고한 영업제한구역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라.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

- 나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승객에게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
- 출항 전 선체·기관·통신·구명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음주 및 약물복용(환각물질 등)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주취자·정신질환자·환자·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어린이

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
- 무인도에 낚시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야영을 금지시켜야 하며,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ㅇ 잠수어업인 물질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,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 이때 승선자란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, 선상낚시인 및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무인 도서 및 갯바위 낚시터로 안내받은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 자를 말한다.
-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그밖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등 위험지역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.

6. 벌칙 및 과태료 사항

- 낚시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또는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(벌칙) 및 제55조(과 대료)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(영업의 폐쇄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행정처분기준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

7. 부 칙

- 이 고시 시행 후 보성군 고시 제2012 - 60호, 제2013 - 36호, 2015 - 23호는 폐지한다.

※ 인공어초시설지구 세부위치

지선명			시설	어초	시설	경위도
시·군	읍·면	리·동	년도	종류	물량(개)	さ 刊上
Ä					834	
보성	회천	전일	1998	육교형	224	N34° 38′ 53″ E127° 04′ 11″ N34° 38′ 58″ E127° 04′ 15″
	회천	전일	1998	육교형		N34° 38′ 46″ E127° 04′ 24″ N34° 38′ 57″ E127° 04′ 35″
보성	특 량	선소	1999	사각형	100	N34° 41′ 02″ E127° 10′ 57″ N34° 41′ 10″ E127° 11′ 09″
	특 량	선소	1999	사각형		N34° 40′ 52″ E127° 11′ 07″ N34° 41′ 00″ E127° 11′ 19″
보성	득량	선소	2009	신요철	102	N34° 41' 619″ E127° 11' 365″
	득량	선소	2009	신요철		N34° 41' 607″ E127° 11' 333″
	득량	선소	2009	신요철		N34° 41' 618″ E127° 11' 328″
	득량	선소	2010	신요철	408	N34° 41' 611″ E127° 11' 341″
	득량	선소	2010	신요철		N34° 41' 635″ E127° 11' 443″
	득량	선소	2010	신요철		N34° 41' 607″ E127° 11' 415″
	득량	선소	2010	신요철		N34° 41' 576″ E127° 11' 374″